

●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82호

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한다.

2014년 10월 6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**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**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부패행위"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및 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」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

2. "내부공익신고"(이하 "내부신고"라 한다)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공직자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

나. 부패행위를 강요·제의 받은 경우

다.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모든 직원(이하 “공직자”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4조(신고의무)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패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 업무 부서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며,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책임관이 된다.

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신고의 방법)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·전화·우편·인터넷,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, 신고대상·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부패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

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7조 (신고의 처리) ①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,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 부패 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.

③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 중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.

⑥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1.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

2. 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3.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

4.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

5.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⑦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「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」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패행위자 및 부패행위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보장) ① 내부신고의 접수·조사·통지·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직자는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신분보장) ① 공직자는 이 훈령에 따른 신고·진술·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공직자는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

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· 전직 ·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(이하 "신분 보장조치" 등이라 한다.)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,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⑤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징계권자에게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,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 또는 인사권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조자 보호)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,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보호대상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1.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
2. 피신고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
3.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

제12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②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포상 실시 등) ①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상훈법」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·기소유예·기소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
  2.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·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
  3.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(포상금의 지급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 부서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
2. 신고 전 이미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
3.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
4. 감사담당 공직자가 신고한 경우
5.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
6. 본인의 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
7.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감사담당 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재검토 기한)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
## 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#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(제13조 관련)

가. 금품·향응 수수관련 신고

부패행위 등의 유형	포상금 지급기준	상한액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고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금품·향응 수수액의 20% 이내	5,000만원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였으나, 위법·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5% 이내	3,000만원
의례적인 금품·향응 수수의 경우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% 이내	1,500만원

\* 비 고

1. 예산 등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그 횡령액을 금품·향응 수수액으로 보아 위 표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한다.
2. 위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포상금의 지급금액이 3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.

나.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

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	지급액
징계처분이 있는 경우	100만원
주의, 경고 등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	30만원

